

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「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 및 「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」 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1년 6월 9일

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장



1. 제정이유

- 생활악취는 주민과 밀접한 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감각적이고 주관적인 오염물질로 개인적 성향이나 상황에 따라 악취 정도가 판단되기 때문에 정량적 측정이 어려운 이유로 악취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는 등 이에 대응하는 적합한 악취관리방안이 요구되며, 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(안 제2조).
- 나. 구청장 및 사업자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3조 및 제4조).
- 다. 악취실태조사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5조).
- 라. 생활악취의 방지를 위한 지원사업 등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7조).
- 마. 주민 모니터링단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9조).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나. 성명(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·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기타 참고사항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주소 :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9길 40(을지로6가 18-14) 의회사무과
- 전화 : 02)3396-8157 팩스 : 02)3396-9055
- E-mail : queen@junggu.seoul.kr

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생활악취의 발생을 방지 및 저감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악취”란 「악취방지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 따른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.
2. “생활악취”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.
3. “악취배출시설”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.
4. “사업자”란 산업 및 영업 활동으로 생활악취를 발생시키는 자를 말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 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악취검사, 악취 원인조사 등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4조(사업자의 책무) 사업자는 사업활동 이전에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구청장이 시행하는 생활악취 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제5조(악취실태조사) ① 구청장은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악취 배출원에 대한 규모별·업종별 배출 특성 등 생활악취 배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.

-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

등을 통하여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

제6조(악취지도의 작성) 구청장은 생활악취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일정 지역의 악취 발생현황 등을 표시한 악취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.

제7조(지원사업 등) ① 구청장은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생활악취 검사 및 기술진단

2. 생활악취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

3.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악취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사업의 세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「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8조(지도·감독)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·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제9조(주민 모니터링단 운영 등) 구청장은 생활악취 민원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주민 모니터링단을 구성·운영할 수 있으며,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대한 상호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